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9. 1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99. 11.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법률 제5864호) 및 동시행령(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동시행규칙(99. 8. 6 환경부령 제83호)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관련조항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비 징수방법을 전표판매방식에서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 부과·징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편익을 도모함.(안 제1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안 제27조)
 - 시행규칙 제79조 → 시행령 제27조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시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허가기준 외에 최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7조로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확보하도록 강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삭제 이유는?	<input type="radio"/>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input type="radio"/> 조례 제13조의 처리장 처리비를 전표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던 것을 전산부과 징수로 개정하는 이유는?	<input type="radio"/> 전산으로 부과 징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법률 제5864호) 및 동시행령(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동시행규칙(99. 8. 6 환경부령 제83호)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관련조항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비 징수방법을 전표판매방식에서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부과·징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편익을 도모함.(안 제1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안 제27조)
 - 시행규칙 제79조 → 시행령 제27조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시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허가기준 외에 최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7조로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확보하도록 강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함.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를 “멸실신고”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처리장 처리비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부과·징수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본문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79조”를 “시행령 제27조”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검사) ①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6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삭제)

오수정화시설·한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침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즉시 적정 설치여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 후 시설 관리 및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생략)

⑤(생략)

제7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월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미만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 1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결과는 점검 기록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①(현행 제4항과 같음)

②(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삭제)

(삭제)

(삭제)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기능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영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 대행자</u> <u>2. 시해규칙 제97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u> 	(삭제)
<p><u>④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구조, 기계·설비 등 정화기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해규칙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삭제)
<p><u>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의 용도변경 중·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 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p>	(삭제)
<p><u>⑥법 제14조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삭제)
<p><u>제11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u></p>	<u>제11조(삭제)</u>
<p><u>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삭제)
<p><u>②시장은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u></p>	(삭제)
<p><u>③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스크린, 기계</u> 	(삭제)

청소, 스컴 및 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하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정화효율 저하방지 를 위하여 시설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반송대상 오니는 제외한다)를 수시로 농축오니 저류조에 옮겨 저장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에서 정한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략)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생략)

②(생략)

③처리장 처리비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유지하고, 반입된 물량을 일정 5 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삭제)

제12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
.....(단서조합 삭제)

제13조(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처리장 처리비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부과·징수한다.

(삭제)

<p><u>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u>제18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u>제20조(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중간·준공 검사)</u></p> <p>① 법 제25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이하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칠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u>제21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u></p> <p>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p> <p>1. 정기점검</p> <p>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p> <p>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 삼</p> <p>2. 방류수 수질 측정</p> <p>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p>	<p><u>제18조(삭제)</u></p> <p><u>제20조(삭제)</u></p> <p><u>제21조(삭제)</u></p>
--	--

<p><u>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u></p> <p><u>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u></p> <p style="padding-left: 2em;"><u>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개월마다 1회</u></p> <p style="padding-left: 2em;"><u>이상</u></p> <p><u>3.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하여야 한다.</u></p> <p><u>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파리, 모기 등</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점</u> (삭제)</p> <p><u>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u></p> <p><u>다음과 같다.</u></p> <p><u>1. 제1항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31조의 규정에</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의한 기술관리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97조의</u></p> <p style="padding-left: 2em;"><u>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u></p> <p style="padding-left: 2em;"><u>자격기준에 적합한 자</u></p> <p><u>2. 제1항제1호의 방류수 수질측정은 수질환경보</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업자</u></p> <p><u>③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는 제12조제1</u> (삭제)</p> <p><u>항제2호의 "별표 2"를 준용한다.</u></p> <p><u>제2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u></p> <p style="padding-left: 2em;"><u>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u></p> <p style="padding-left: 2em;"><u>는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u></p> <p style="padding-left: 2em;"><u>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u></p> <p><u>②시장은 분뇨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u></p> <p style="padding-left: 2em;"><u>여 분뇨의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에 불필요한</u></p> <p style="padding-left: 2em;"><u>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u></p> <p style="padding-left: 2em;"><u>할 수 있다.</u></p> <p><u>③분뇨관련 영업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사</u> (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u>업기간 연장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u>④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u></p>	
---	--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
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
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최저 차고지 확보

2. 소독기 1조 이상

.....

.....

.....시행령 제27조.....

.....

.....

1. (삭제)

2. (현행과 같음)